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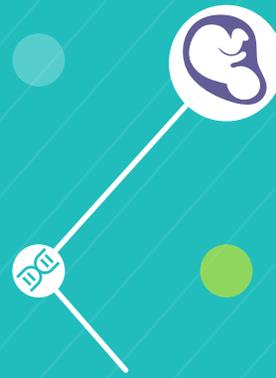
### 신청방법

- ☑ 관할지사 접수(우편, 팩스, 방문)
- ☑ 산재보험 토탈서비스
- ☑ 의료기관 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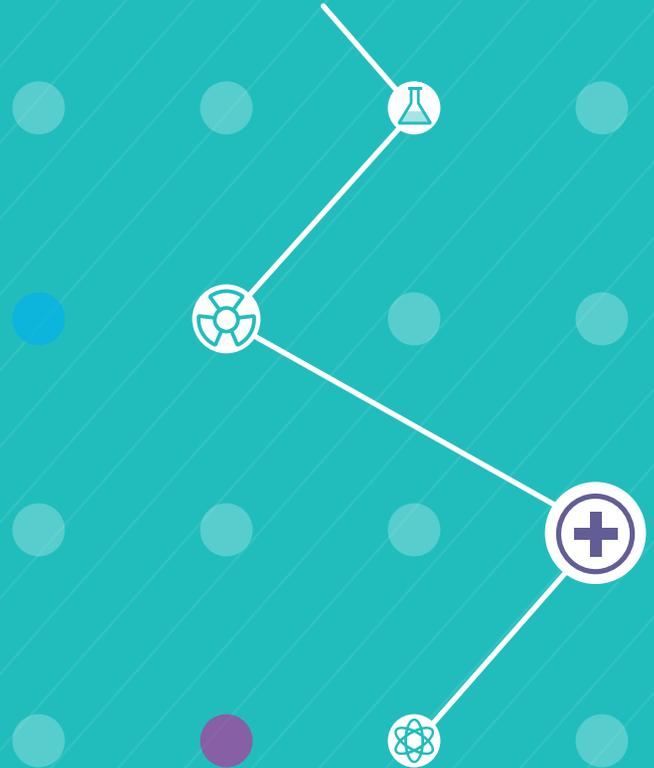
### 고객상담 및 안내

☎ 1588-0075

🌐 [www.total.comwel.or.kr](http://www.total.comwel.or.kr)



## 건강손상자녀 및 업무상 유산·사산 산재신청



##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기준

-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조항 신설됨\*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사고, 출퇴근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·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, 질병, 장애, 사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함

\* 개정안 제36조, 제3장의3(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) 신설(23. 1. 12. 시행)

## 건강손상자녀 산재 적용대상

- 개정법 시행일(2023. 1. 12.)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원칙
- 단, 아래의 경우 소급적용 가능
  -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
  -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
  -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 청구한 경우

## 건강손상자녀 산재 급여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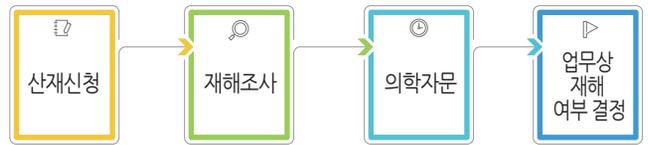
대상	급여종류	내용
건강손상자녀	요양급여	건강손상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, 간병료 등 ※ 요양급여의 범위: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, 수술, 그 밖의 치료 ④ 재활 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
	장해급여	건강손상자녀가 치료 후 장애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 ※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 시행
	간병급여	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간병급여 지급
	직업재활급여	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
유족	장례비	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

## 건강손상자녀 산재 인정사례

- 임신부와 태아에게 유해한 약물 등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일정기간 지속적·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선천성 질환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

## 건강손상자녀 산재 처리절차

### 업무상 사고



### 업무상 질병



## 업무상 유산·사산 산재 인정기준

「산재보험법」시행령 제 34조제3항 별표3 제13호에 따라 유산·사산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함



## 업무상 유산·사산 산재 인정사례

임신 중이었음에도 3일 연속 철야근무 등 과도한 야간근무와 휴식이 전혀 없었던 점, 고객의 극심한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